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 계획의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기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사업자·주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주민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 사업자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협조한다.
 - 시민은 녹색생활을 적극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 녹색경영 촉진에 힘써야하며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고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힘써야 한다.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7조)

-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 타 조례 제·개정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고, 관련 계획과 정책은 타 조례에 우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추진계획 수립(안 제8조)

-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안 제16조)

-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안 제17조)

-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친환경 주택보급, 필요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등 지원
- 녹색기업의 육성지원 시책마련, 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우 지원 노력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18조)

-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9조)

-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확대하고 공용차는 친환경 차로 교체하고,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21조)

- 환경부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제23조)

-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 수립 한다.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안 제24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종합적, 체계적,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자원을 강화 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미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이 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나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0조제9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 할 수 있다.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7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 한다.

제2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1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2조(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와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와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 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